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보유한 건설업체 본사가 건설공사의 입찰, 계약 단계에서부터 착공 등 시공이전단계와 공사완료시까지 각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·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건설현장을 주로 운영하면서 건설업체 본사에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건설 업체의 본사에 적용하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(가) "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"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·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건설현장을 주로 운영하면서 건설업체 본사에 안전보건 전담부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건설업체의 본사를 말한다.
- (나) "사업주"라 함은 소속현장을 관리하는 최고경영자를 말한다.
- (다) "안전보건관리책임자"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하여 당해 건설 현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건설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·관리하는 자를 말하며, 통상 현장소장을 의미한다.
- (라) "안전보건관리문서"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.
- (마) "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"라 함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.